

자유공원 행정재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사용·수익허가 공고문

1. 공고사항

건명	자유공원 행정재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 기간	2026. 6. 9.(화) ~ 2026. 6. 16.(화) 18:00까지 (09:00 ~ 18:00 업무시간 내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처	인천 중구청 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중앙로 201 8층)
현장설명일	현장설명 생략
허가대상자 선정	2026. 6. 17.(수) 10:00 예정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에게 우선 통보할 예정.
계약자 선정 방법	[별지1] 참조, 같은 순위인 경우 추첨에 의함

2. 사용·수익허가 내역 (※ 인천 중구청은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함**)

소재지	사용목적	허가기간	예정가격	시설현황			
				위치	내역	면적(㎡), 구조	비고
자유공원 (송학동1가 1-1)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2026. 6월 ~ 2029. 5월 (착수일로부터 3년)	금197,175원 (부가세 및 공공요금별도)	1층	자동 판매기	사용면적 2.25 (가설건축물 1개동 총면적 7.5)	음료 1대, 과자 1대

※ 행정재산 사용료 (계약금액)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지정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우선 사용·수익허가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5조에 의거 수의 계약 대상으로 적합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만19세 이상, 1세대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양도 불가)

다. 공고일 현재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 사용허가신청 후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 등을 모두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 등을 우리 중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명의 차용시 취소결정),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2】 1부
-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위임장(중증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 4)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5)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 6) 행정재산(자동차판기) 운영 이행서약서【별지3】 1부

나. 제출방법 : 사용·수익허가 신청자는 우리 중구청 도시개발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FAX 및 전자 접수 불가)

5.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원본지참) 1부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생산물배상 담보 포함, 중구청을 추가피보험자로 포함 - 대인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대물1사고당 3천만원 이상 가입)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마. 자동판매기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1부
- 바. 기타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각서 등의 서류

6.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결정

- 가. 개별법령에 따라 신청자가 1명일 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
- 나. 신청자가 2명이상일 때 【별지1】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
- 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입찰을 통하여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 가.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대리인 계약 불가)
- 나.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함(분할납부 불가)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8. 유의 사항

- 가. 요건을 갖춘 “장애인 등” 이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한 기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나. A기관에서 우선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이를 감추고, B기관에 우선허가를 신청하여 중복 우선허가를 받고 발각된 경우 B기관의 허가를 취소합니다.
※ 별도의 각서 제출
-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자유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등에 의하므로 참가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 중구청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판기 운영수익에 대한 본 중구청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중구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바.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 공고내용은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고의 연기 또는 취소

우리 중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계약집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관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에 의함.

10. 사용수익 허가 및 특수조건 : [붙임1], [붙임2] 참고

- 붙임 1.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
2.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 별지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우선 순위 (제6조제1항 관련)
2. 설치 및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3.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운영 이행서약서

2026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붙임 1】

행정재산(자판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중구 자유공원의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 판매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우선 계약 기간은 2026. 6. ~ 2029. 5. (착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

① 사용료 금액은 일시불로 지정된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계약기간 내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며 이는 최초 계약가에 토지 공시지가 증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1년) 전액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의 제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추가피보험자로 포함하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 담보 포함, 중구청을 추가피보험자로 포함 - 대인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대물 1사고당 3천만원 이상 가입)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및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 및 부과금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과금(전기요금)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매월 고지서에 명기된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지체 없이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판매기 설치자의 행위제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 (단,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임장 제출)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자동판매기 판매물품의 판매금액의 일방적인 변경 행위
6. 이 계약으로 인한 연고권 주장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계약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 운영이 적발될 때
5. 운영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6. 본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용허가조건과 공고문의 조건을 위반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
8. 관리운영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거나 물의가 야기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3회 경고 조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정당업자제재는 취하지 아니한다. 단, 2개월 전에 포기의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탁 운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②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민원처리)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1.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동판매기 이용자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 본 판매기 설치자가 이를 배상 또는 처리 해결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의 관리는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책임 하에 두며, 도난·손괴 등이 발생할 시 설치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자동판매기 이용 중 민원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7조(자동판매기의 이동)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의 장소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8조(준수사항)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유공원의 환경에 저해가 되는 가설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판매기를 수시 점검하여 고장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 사용 일체에 대하여는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별도 협의에 의한다.

【붙임 2】

행정재산(자판기 설치·운영)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한다.

1. 자판기 운영의 제반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민원 제기 시 적극 수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자판기 판매대수 및 판매대상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은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것만 인정하며, 임의로 판매대수 및 품목을 추가하지 못한다.
(단,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4.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를 통한 물품 판매만 가능하며 자판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의 판매는 절대 금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요구가 있을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단가는 자판기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5.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에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증명서 사본 제출) 이를 해태하여 공원 운영상 손해나 기타 문제 발생 시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6.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자판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7. 무인자판기 시스템으로 하되 자판기 주변의 위생 청결, 고장 및 품질 등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해결**(1시간 이내) 하여야 한다.
8.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자판기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한다.
10.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의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시에는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다음 자동판매기 설치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권리금) 돈을 청구하지 못한다.
13. 자판기 운영에 따른 시설물은 운영계약 만료 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계약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귀속되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철거하지 않은 시설 또는 물품도 자동 귀속 처리된다. 운영계약 해지 시에도 귀속된 시설에 대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귀속을 취소하지 못하며, 계약기간 중 설치한 시설물 또한 이와 같다.
14.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자판기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판기에 대한 권리금 등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5.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본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 제한/휴장/행사·보수로 인해 운영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그로 인한 통상의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6. 허가기간 중 행정재산(자판기 설치 및 사용)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을 위반할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 일 때 허가를 취소한다.
17.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허가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본 편의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 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3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별지 2】

자동판매기 설치 및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illegible]

【별지 3】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이행서약서

□ 재산의 표시

구분	주소	사용면적	용도	설치대수
행정재산	자유공원 (송학동1가 1-1)	2.25㎡	자동판매기설치·운영	음료 1대 과자 1대

□ 사용기간 : 2026. 6. . ~ 2029. 5. . (착수일로부터 3년)

위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의 없이 사용허가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4. 행정재산 사용료는 규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5. 각종 제세공과금 및 시설투자금액, 추가 비품 구입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철수(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허가시설을 명도한다.

2026. . .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